

	실병관리청	보	도 침	밝고	사 료
배 포 일	2020. 12. 12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원,	최 은 경	겐	- ₹Γ	043-719-9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6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8명(치명률 1.3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28	359	58	35	42	9	18	23	1	268	36	21	9	5	8	19	17	0
누계	36,872	11,211	1,101	7,220	1,637	699	569	364	102	8,443	749	457	958	426	420	1,722	715	79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 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2	0	8	5	7	2	0	12	10	13	9
누계	4.864	30	2,315	886	1,467	148	18	2,259	2,605	2,645	2,219
	4,004	(0.6%)	(47.6%)	(18.2%)	(30.2%)	(3.0%)	(0.4%)	(46.4%)	(53.6%)	(54.4%)	(45.6%)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3명(2명), 일본 1명, 유럽 : 불가리아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타기 1명(1명), 헝가리 1명, 크로아티아 1명, 아메리카 : 마국 7명(2명), 아프리카 : 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11.(금) 0시 기준	31,157	9,057	169	572
12.12.(토) 0시 기준	31,493	9,665	179	578
변동	(+)336	(+)608	(+)10	(+)6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 12월 12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후 접촉자 조사 중 9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91명이다.
 - * (구분) 조사 중
 - 서울 서초구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 (구분) 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4명
 - 서울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계	직원	가족
전일	10	10	-
금일	14(+4)	11(+1)	3(+3)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0명*이다.

구분	계	음식점 관련 (지표환자 포함)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전일	216	140	44	13	5	14
금일	230(+14)	143(+3)	49(+5)	13	9(+4)	16(+2)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 (구분) 입원환자 10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2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9일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중 6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 * (구분) 직원 6명, 입원환자 60명
- 경기 광명시 스포츠교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 (구분) 강사 1명. 수강생 5명.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성남시 보험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 **(구분)** 직원 12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 (구분) 이용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7명(+6)
- **강원 강릉시 기타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11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	계	기타 강습 관련	문화원 관련	지인	추가전파		
下世	T군 게	(지표환자포함)	군화권 인간	시킨	가족	기타	
전일	11	6	-	1	-	4	
금일	18(+7)	5(-1) [*]	3(+3)	3(+2)	5(+5)	2(-2)*	

- * 역학조사 결과 환자구분 재분류
-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기타강습/문화원·지인 → 가족·직장









- **강원 춘천시 수학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 (구분) 수강생 7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1명, 강사의 가족 1명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 * (구분) 교인 31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울산 북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 (구분) 학생 18명(지표환자 포함; 1학년 17명, 3학년 1명)
- 울산 남구 중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7명이다.

그ㅂ	계	학	생	가족	기타	
구분	71	1학년	3학년	/ 기국	7157	
12.10일	20	4	11	3	2	
금일	27(+7)	4	12(+1)	3	8(+6)	

- 제주 선교회와 관련하여 1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 * **(구분)** 교인 5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무증상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확대 방안을 재차 설명하면서 수도권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원하는 수도권 시민은 증상 유무 또는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내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12월 14일(월)부터 총 150여 개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 2021년 1월 3일(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동안 **평일·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시간도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체 채취 인력과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며, 증상이 없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로 진행된다.
 - * 검사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필수), 측정체온, 성별, 연령대, 자기기입식 증상 정보 등 검사 희망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
 - 행정지원 인력은 수도권 역학조사를 위한 군,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이 우선적으로 배치









되었으며, 추후 480여 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 *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통보, 긴급 검체 수송,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
-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365명(의사 52,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282, 간호 조무사 31)도 투입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 PCR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 *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가 어렵거나 신속한 검사 결과가 꼭 필요한 경우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유전자검출검사법(비인두 도말 또는 타액 PCR)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 후 관할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민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 후 임시선별검사소 인력으로부터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다.
 -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검사 인원 등 검사 여건에 따라 30분~2시간 가량 대기 필요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검출검사를 받은 시민이 추후 보건소로부터 양성 결과를 통지받으면 즉시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며, 신속 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시민의 검체를 다시 채취하여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해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된다. 이때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시민은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진자에 준하여 관리된다.

【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법 3종 안내 】

구분	비인두도말 PCR법	신속항원검사법	타액 PCR법		
시간	24시간 이내	30분 이상 (양성시, 추가 24시간 필요)	24시간 이내		
민감도/	민감도 : 98% 이상	민감도 : 90%	민감도 : 92%		
특이도*	특이도 : 100%	특이도 : 96%	특이도 : 100%		
검체	비인두도말	비인두도말	타액(침)		
절차	검체채취 → PCR ⇒ 확진	검체채취 → 현장검사 ⇒ (양성) → 검체 재채취 → PCR ⇒ 확진	타액 채취 → PCR ⇒ 확진		

^{*} 현재까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에 대한 민감도 및 특이도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선제적 전수검사 중간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일제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강원 소재 9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3명이 확인되었고, 주기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소재 7개 시설에서 확진자 56명이 추가적 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단위 : 명)

78	쉐ᅱ	ПM			확진지	<u>(211.3)</u>
구분	소재지	시설	계	지표환자	확진일	추가환자
	서울	요양병원	1	1 (종사자)	10.22.	0
지출 이용시 경기 주건 이용시	서울	주간 이용시설	76	8 (이용자)	10.30.	15 (종사자), 24 (이용자) 28 (가족 및 지인), 1 (방문자)
	주간 이용시설	1	1 (이용자)	10.28.	0	
일제 검사	일제 검사 경기 주간 이용시설	1	1 (이용자)	11.01.	0	
	부산	요양병원	4	1 (종사자)	10.20.	3 (입원환자)
	충남	요양시설	2	1 (종사자)	10.30.	1 (가족)
	충남	요양병원	1	1 (종사자)	10.30.	0









구분	소재지	시설			확진지	ŀ
一世	고제시	시결	계	지표환자	확진일	추가환자
	강원	요양병원	16	1 (종사자)	11.12.	3 (종사자), 6 (입소자) 6 (가족)
	강원	주간 이용시설	1	1 (종사자)	11.19.	0
	서울	요양병원	1	1 (종사자)	11.22.	0
	서울	요양병원	1	1 (종사자)	11.24.	0
	서울	요양병원	1	1 (종사자)	11.28.	0
주기 검사	서울	요양시설	1	1 (종사자)	11.28.	0
	부산	요양병원	25	6 (종사자)	12.3.	9 (입원환자) , 6(종사자) , 4(기타)
	서울	재활병원	1	1 (종사자)	12.09.	0
	경기	주간 이용시설	26	24(종사자 7 이용자17)	12.10.	2(가족)

-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 (12.11일 기준): 계획 대비 시설 기준 91.3%(6,146/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92.3%(242.065/262,143명) 검사 완료
 -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전수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 중으로,
 -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관 중 참여 희망한 83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사용하고 있으며,
 - 요양 및 정신시설은 검체 채취 및 검사 인력이 부재한 관계로 서울 소재 1,131개소를 대상으로 자가 채취 가능한 타액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지금은 **3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당국과 함께**









-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지난 1주간(12.5일~12.11일) 하루 평균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국 발생의 약 75%를 차지한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진단검사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현재의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즉시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비수도권 시민들도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 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선별진료소)
- 모든 국민들은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 서나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그간 두 차례 큰 위기 당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연대가 다시 발휘된다면 지금의 유행 상황도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방역을 충실히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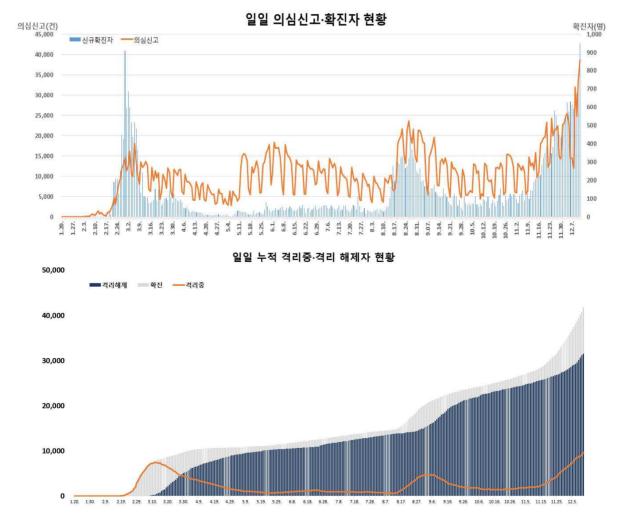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① **일일 확진자 현황** (12.12. 0시 기준, 41,736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ТЕ	5 7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급시 중	크피 급경					
12.10.(목) 0시 기준	3,311,213	40,786	31,157	9,057	572	77,688	3,192,739					
12.11.(금) 0시 기준	3,349,864	41,736	31,493	9,665	578	86,742	3,221,386					
변동	+38,651	+950	+336	+608	+6	+9,054	+28,647					

-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12. 0시 기준, 41,73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	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17	국내발생	해외유입	7 2 4 1 4 1	(70)	발생률 []					
서울	359	3	11,788	(28.24)	121.11					
부산	58	1	1,178	(2.82)	34.53					
대구	35	0	7,321	(17.54)	300.47					
인천	42	0	1,779	(4.26)	60.18					
광주	9	0	785	(1.88)	53.89					
대전	18	0	610	(1.46)	41.38					
울산	23	0	421	(1.01)	36.70					
세종	1	0	124	(0.30)	36.22					
경기	268	4	9,406	(22.54)	70.99					
강원	36	0	789	(1.89)	51.22					
충북	21	0	519	(1.24)	32.45					
충남	9	1	1,054	(2.53)	49.66					
전북	5	1	489	(1.17)	26.91					
전남	8	0	473	(1.13)	25.37					
경북	19	0	1,816	(4.35)	68.21					
경남	17	0	818	(1.96)	24.34					
제주	0	0	107	(0.26)	15.95					
검역	0	12	2,259	(5.41)	-					
총합계	928	22	41,736	(100)	80.50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격리 중	9,665	4,223	376	85	404	102	112	209	20	2,224	211	230	226	172	106	110	216	32	607
격리해제	31,493	7,456		7,036	•			208		7,048		286	818	315		1,648		75	1,651
사망	578	109	19	200	12	3	6	4	0	134	11	3		2	4	58	2	0	1
합 계	41,736	11,788	1,178	7,321	1,779	785	610	421	124	9,406	789	519	1,054	489	473	1,816	818	107	2,259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명, 확진(보고)일 기준) ■서울 ■이천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300 현황 서울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16,000 300 11,788 12,000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4.000 100 인천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8,000 ----신규확진자 150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100 4,000 2,000 경기지역 일일 신규 및 누적 확진자 현황 (명, 확진(보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16,000 12,000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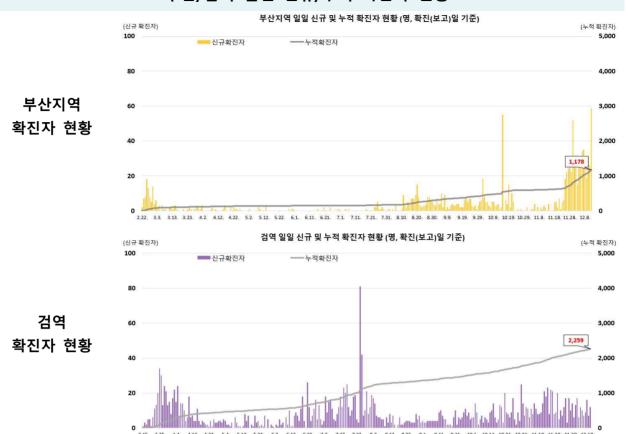




4.000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12. 0시 기준, 41,736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950	(100)	41,736	(100)	80.50				
 성별	남성	436	(45.89)	20,029	(47.99)	77.44				
O Z	여성	514	(54.11)	21,707	(52.01)	83.54				
	80세 이상	68	(7.16)	1,854	(4.44)	97.62				
	70-79	69	(7.26)	3,231	(7.74)	89.57				
	60-69	148	(15.58)	6,385	(15.30)	100.64				
	50-59	174	(18.32)	7,619	(18.26)	87.91				
연령	40-49	142	(14.95)	5,856	(14.03)	69.80				
	30-39	114	(12.00)	5,391	(12.92)	76.52				
	20-29	97	(10.21)	7,492	(17.95)	110.07				
	10-19	86	(9.05)	2,598	(6.22)	52.59				
	0-9	52	(5.47)	1,310	(3.14)	31.58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12.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6	(100)	578	(100)	1.38				
 성별	남성	3	(50.00)	295	(51.04)	1.47				
° ∂ ≥	여성	3	(50.00)	283	(48.96)	1.30				
	80세 이상	4	(66.67)	298	(51.56)	16.07				
	70-79	2	(33.33)	180	(31.14)	5.57				
	60-69	0	(0.00)	68	(11.76)	1.06				
	50-59	0	(0.00)	25	(4.33)	0.33				
연령	40-49	0	(0.00)	5	(0.87)	0.09				
	30-39	0	(0.00)	2	(0.35)	0.04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12.11. 12.12.

계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134 149 172 169 179

구분	위중증	(%)
계	179	(100.0)
80세 이상	38	(21.2)
70-79세	66	(36.9)
60-69세	45	(25.1)
50-59세	27	(15.1)
40-49세	3	(1.7)
30-39세	0	(0.0)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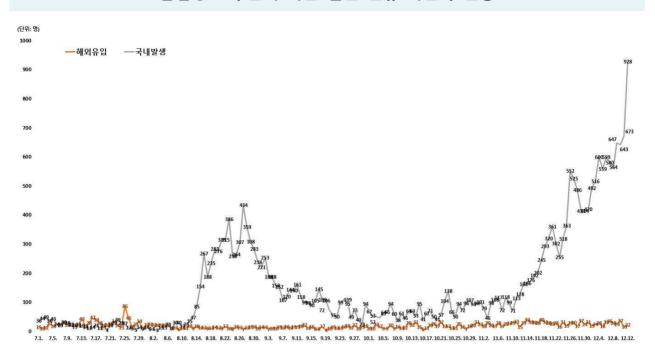






⑤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29일 0시~12.12일 0시까지 신고된 8,423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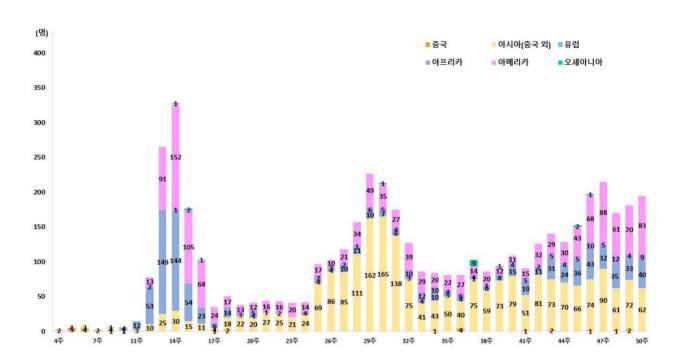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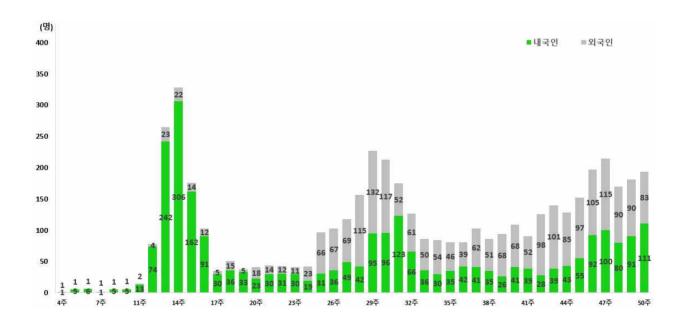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 T_1	- HC	20			
					ŀ (단위: 당	병, %)				
지역	느게	해외			생 관련	#101001	71 EL*	ᇴᇿᄌ	117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유입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	조사중	신규	
서울	11,788	577	5,609	8	5,521	80	3 284	2,318	36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Z	11,700	311	3,009	0	3,321	00	3,204	2,310	302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1,178	77	770	12	703	55	209	122	59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7,321	101	5,493	4,512	974	7	959	768	35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인천	1,779	142	1,028	2	1,017	9	380	229	42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광주	785	86	572	9	557	6	72	55	9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040	44	220	_	200		454	70	40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대전	610	41	339	2	336	1	151	79	18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울산	421	57	301	16	281	4	39	24	23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721	37	301	10	201	7	33	24	23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세종	124	22	70	1	68	1	18	14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9,406	963	4,412	29	4,315	68	2,606	1,425	272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4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강원	789	40	522	17	504	1	142	85	36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30명)
충북	519	62	217	6	204	7	158	82	21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5명)
ᄎᄔ	4.054	00	F70	_	F77		040	400	40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31명)
충남	1,054	96	578	0	577	1	242	138	10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전북	489	63	298	1	296	1	85	43	6	• 경기도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100	00	200	•	200	•	00	70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2명) 경기 고양시 요양원 I 관련(43명)
전남	473	53	326	1	323	2	62	32	8	• 경기 고양시 요양원표 관련(45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표 관련(27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65명)
경북	1,816	94	1,327	565	762	0	233	162	19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3명)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경남	818	103	539	32	504	3	102	74	17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19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제주	107	28	35	0	34	1	28	16	0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ᅰద	0.050	0.050				0	_	_	40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66명)
검역	2,259	2,259	0	0	0	0	0	0	12	• 서울 강서구 교회 관련(47명)
	41 736	4 864	22,436	5 212	16 076	247	8 770	5,666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49명)
합계	1 -1,700	7,004	22,700	0,210	10,010	∠ -T1	5,770	5,500	950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79명)
- "	(%)	(11.7)	(53.8)	(12.5)	(40.7)	(0.6)	(21.0)	(13.6)		• 광주 직장/동호회모임 관련(25명)
	(, = ,		(/	`/	` '/	()	,	` =/		• 부산 연제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2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7 H	누적 빌	날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전 귀.} 경 ? 인구10만명당
구분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
미국	15,203,208	287,384	230,852	3,390	1.89	4,619.63
인도	9,796,769	142,186	29,398	414	1.45	715.77
브라질	6,728,452	178,995	53,453	836	2.66	3,167.82
러시아	2,597,711	45,893	28,585	613	1.77	1,805.22
프랑스	2,297,425	56,572	13,673	292	2.46	3,507.52
영국	1,787,787	63,082	20,964	516	3.53	2,668.34
이탈리아	1,787,147	62,626	16,998	887	3.50	3,018.83
스페인	1,720,056	47,344	7,955	325	2.75	3,707.02
아르헨티나	1,475,222	40,222	5,303	213	2.73	3,271.00
콜롬비아	1,392,133	38,308	7,523	150	2.75	2,795.45
독일	1,272,078	20,970	29,875	598	1.65	1,543.78
멕시코	1,205,229	111,655	11,974	781	9.26	910.98
폴란드	1,102,096	21,630	13,750	470	1.96	2,900.25
이란	1,083,023	51,496	10,403	284	4.75	1,308.00
페루	977,312	36,455	691	54	3.73	2,970.55
터키***	934,229	15,751	30,424	220	1.69	1,125.58
우크라이나	872,228	14,755	13,514	285	1.69	1,991.39
남아프리카공화국	836,764	22,747	8,166	173	2.72	1,440.21
벨기에**	600,397	17,692	3	6	2.95	5,175.84
인도네시아	598,933	18,336	6,033	165	3.06	222.24
네덜란드	585,064	9,892	8,793	64	1.69	3,421.43
이라크	571,253	12,526	1,380	25	2.19	1,413.99
체코	569,205	9,341	5,872	115	1.64	5,369.86
칠레	566,440	15,774	1,662	84	2.78	3,024.24
스웨덴	312,728	7,354	7,084	4	2.35	3,096.32
카자흐스탄**	183,630	2,542	_	_	1.38	987.26
일본	171,542	2,502	2,969	37	1.46	135.18
중국	86,701	4,634	13	0	5.34	6.11
말레이시아	78,499	396	2,234	3	0.50	241.54
키르기스스탄	76,718	1,307	327	1	1.70	1,237.39
우즈베키스탄	74,664	611	166	0	0.82	227.63
싱가포르	58,297	29	6	0	0.05	988.08
호주	28,000	908	7	0	3.24	111.55
태국	4,169	60	18	0	1.44	6.02
베트남	1,385	35	4	0	2.53	1.42
대한민국	41,736	578	950	6	1.38	80.50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에서 집계방식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보고한 유증상 확진자수 토대로 집계하였으나, 11.27.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포함하여 집계)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붙임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m²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8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 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 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 트라이크아웃제'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 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H⊦⊡ ԾԼՈՍ ⊏	▶ 시설 면적 8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ㄱㅂ止베 ᆼ ㅗᆫ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7708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U-12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교습소·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직업훈련기관	②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300m² 이상)	· 키ㅡ→ ㄱㅇ, 런시'ㅗㄱ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갂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